

2002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WTO 뉴라운드 협정과 원자력

WTO New Round Agreement and Nuclear

이만기 · 문기환 · 김승수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 약

WTO의 뉴라운드 출범을 계기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원자력 분야도 협상의 틀 안에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조달협정에서 현재 보호받고 있는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시장도 향후 개방될 전망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전의 발전회사가 민영화되면 정부조달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는 되겠지만 서비스 분야의 WTO 규범을 따라야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개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지원금의 경우 현재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사업성을 띤 연구개발의 지원과 벤처지원과 연구원 창업 등과 관련된 연구비 지원의 성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논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 사업서비스, 건설서비스, 에너지서비스 분야의 협상에 있어서 국익의 최대화와 연구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앞으로 최대 원자력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tart of new round of WTO could be recognized as a turning point shifting from bilateral or regional trade system to multilateral trade system worldwide.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system are expected to have some impact on the Korean nuclear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n Korean nuclear industry within the framework of new WTO regime. It is necessary to prepare opening the market for the plant design and engineering. This market has been protected by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AGP). However, this market will be eventually influenced by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ith KEPCO's on going privatization being completed. There have been no impacts on R&D fund provided by the government as yet. However, in case of

Government supported R&D for commercial purpose, there are much concerns to be discussed further within new WTO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y for maximizing national interests and promoting R&D in the negotiation for design and construction services related with nuclear industry, and energy services. Furthermore, to effectively explore new nuclear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market analyses for their countries are required.

1. WTO 개관¹⁾²⁾³⁾

가. 설립배경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는 1995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국제기구 중에서는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다. 하지만 WTO는 제2차 대전 직후 창설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후속기구이며, GATT 하에서 형성된 다자간 무역체제의 역사는 50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다.

GATT가 태동한 근본적인 이유는 193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어온 보호주의 조치의 거대한 유산을 시정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경제재건을 위한 무역자유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었다.

GATT는 1948년부터 1994년까지 47년 동안에 걸쳐 세계교역의 안정성 확보와 자유화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에 일련의 경제침체가 발생하자 각국 정부는 외국의 경쟁압력에 직면한 분야에 대해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서구 및 북미의 각국 정부는 높은 실업률과 지속적인 공장폐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국들과 양자간 시장분할협정을 모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교역에서는 자기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GATT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의심받게 되었다.

GATT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1980년대 초의 세계 교역 현실은 1940년대와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교역은 40년 전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범지구권화 되었으며, GATT규범 체제하에 있지 않던 서비스교역이 많은 국가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한 국제투자도 신장되어 갔다. 그 외에도 농산물분야에서 다자간 체제의 허점이 악용되어 농산물교역의 자유화 노력이 큰 성과를 보

1) 외교통상부(www.mofat.go.kr/) 홈페이지 자료 (『WTO 이해하기』, 『WTO 바로알기』)

2) 재정경제부, 『WTO의 과거, 현재와 미래(Uruguay에서 Doha까지)』, 2001. 11

3)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원전산업 발전방향 정립 연구』, 1999. 11

지 못했던 것이다.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는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반에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GATT의 보편적 규율에 대한 예외가 다자간 섬유협정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통해 GATT 회원국들은 다자간 체제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결국 WTO 창설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 WTO 협정 주요 내용

WTO 협정은 본문과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원칙적인 선언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사항은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다. 부속서 1, 2, 3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17개의 MTA(다자간무역협정, Multilateral Trade Agreement)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4는 협정을 수락하기로 약속한 회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PTA(복수국간무역협정, 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이다.

4개 부속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로 나뉘어 있다.

□ 부속서(Annex) 1A : 상품무역협정(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 GATT(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1994
- 농산물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조치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 기술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
- 제6조(반덤핑)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 제7조(관세평가)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GATT 1994)
- 선적전 검사협정(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 원산지규정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 수입허가절차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 부속서(Annex) 1B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d Annexes)
- 부속서(Annex) 1C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Rights)
- 부속서(Annex) 2 :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부속서(Annex) 3 :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부속서(Annex) 4 :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 민간항공기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 국제낙농 협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 국제 牛肉협정(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2. WTO 뉴라운드 출범4)5)6)7)8)

가. 뉴라운드의 출범 연혁

2001년 11월 9일부터 5일간에 걸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21세기 초반의 국제무역질서를 형성하게 될 뉴라운드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

4) 외교통상부(www.mofat.go.kr/) 홈페이지 자료 (『WTO 개요』)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도하 각료회의 이후 뉴라운드 전망과 대책』, 2001. 11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도하 각료회의의 의의와 향후 전망』, 2001. 11

7) 삼성경제연구소, 『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2001. 11

8)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원전산업 발전방향 정립 연구』, 1999. 11

선언문을 채택하고 성공리에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결실이 있기까지는 WTO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1995년 이후에 개최된 3차례의 각료회의가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96.12 : 제1차 각료회의(싱가폴)

- WTO 최초의 각료회의로 120여개 WTO 회원국 참가
- WTO의 최초사업 실시계획 및 UR협정이행을 중점논의
 - 싱가포르이슈 제기 :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 '98. 5 : 제2차 각료회의(스위스, 제네바)

-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문제를 포함한 WTO의 향후 작업 계획에 관한 논의개시를 결정

□ '99. 11.30~12.3 :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

- 농산물, 시장접근, 뉴이슈(경쟁, 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 이행 및 규범, WTO체제 개선, 노동 등 6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음
 - 서비스 및 공산품 관세인하 부분은 회원국간 상당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 작업반 구성이 필요 없었음
- 각 의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각료회의 중단(suspension)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의제범위에 대한 시각차이와 절차적인 준비부족과 함께 비정부기구(NGO)의 영향력 증대로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의 유연성 감소에 기인하였음
- 2001. 11.9~13간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각료회의 개최하기로 합의

□ 2001.11.9~14 : 제4차 각료회의

- 제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WTO 출범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개발 아젠다』 출범
 - 개도국의 저항을 감안, 뉴라운드라는 표현 대신 “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명칭을 사용기로 결정

나. 도하각료회의의 주요 합의 사항

-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여 2005. 1.1까지 완료

(2003년 5차 각료회의에서 중간평가)

- 시장접근 : 공산품(임·수산 포함), 농업, 서비스
- 규범개선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 포함), 지역협정
- 신규의제 : 환경

※ 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절차(통관등) 분야는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 합의에 의해 협상 형식을 결정한 후 협상 개시

- UR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를 명료화해 달라는 요구(이행문제)에 대해서는 약 절반에 대해 해결방안 합의
 - 기타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최빈개도국 포함), 능력개발, 특별대우를 명시
- '지적재산권(TRIPS)/공중보건에 관한 별도선언'을 통해 AIDS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치료약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확인
- 중국, 대만의 WTO 가입을 승인
 - 그러나, EU등 다수 회원국은 새로운 무역협상에서 21세기에 걸 맞는 여타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
 - 이에는 공산품의 관세인하문제, 투자·경쟁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규범제정문제, 반덤핑문제 등 기존 협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문제 등을 망라

3. 원자력과 WTO 뉴라운드⁹⁾¹⁰⁾

WTO의 협정 중에서 국내 원자력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협정은 정부조달협정, 서비스협정, 보조금·상계조치협정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정부조달 협정

9) 한국전력공사, 『국제무역환경 대응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 산업체제 발전 방향 연구』, 1996.1

10)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원전산업 발전방향 정립 연구』, 1999. 11

정부조달협정은 차별적인 구매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다자간 협상의 일환으로 처음 제정된 협정이다. 이 협정은 가입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서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26개국이 가입 중이다. 우리나라는 한미통상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대한 차별적 조달관행을 계속해서 문제삼자, 이들 통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업체의 해외조달 시장 참여확대와 시장개방을 통한 국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97.1부터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즉 46개 중앙행정 기관 중 42개 기관을 양허하였고 15개 시·도 및 23개 정부투자기관을 양허하였다. 또한 동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49개의 서비스 업종을 양허(금융, 유통, 관광 서비스는 제외)하였고 건설은 7개 업종(토목, 건축, 정지작업, 조립건축, 전문건설, 설비공사, 마감공사)을 양허하였다. 각 물품 및 서비스 조달에 적용되는 기관별 하한선은 표 1과 같으며, 하한선 이상의 경우에는 조달시장을 개방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1 기관별, 부문별 조달시장 개방 하한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서비스시장 (종합엔지니어링 포함)	13만 SDR	20만 SDR	미개방
건설시장 (토목, 건축, 전문건설, 설비공사 등 전업종)	500만 SDR	1,500만 SDR	1,500만 SDR
물품시장 (발전기자재 포함)	13만 SDR	20만 SDR	45만 SDR

주) 1SDR¹¹⁾=약 1.26\$(2001. 11.28)

또한 우리나라는 아래의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공히 설계의 경우 개방하지 않고 수의계약 또는 국내 경쟁입찰을 채택하고 있다.¹²⁾ 주

11)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이란 IMF참가국간의 합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창출된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국제 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7년 9월의 제24차 IMF 연차총회에서 결정되었으며 1970. 1. 1 부터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SDR은 IMF가맹국의 출자금이나 IMF의 외부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국제협약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창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유동성이 증대되며, 성격상 외국환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으로서 그 자체가 화폐라고 할 수 없으며 교환성 통화와 교환됨으로써 그 실체를 가진다.

기기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는 KSNP의 기술 사양상 유일한 국내 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며 화력발전소는 국제경쟁 입찰로 추진중이다. 시공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모두 국제 경쟁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달시장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 조달시장에는 아직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공의 경우 국내 업체가 외국업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음을 말한다. 주기기를 포함한 발전기자재의 경우도 지속적인 기자재 국산화 정책에 따른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WTO 이전부터 한전은 시장을 개방해 왔기 때문에 개방이후에도 시장의 큰 변동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업체가 국내의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물품 인도와 관련된 선적, 통관, 내륙수송, 보관시설 및 관련 부지 등과 관련된 비용 상승요인과 같은 투자 리스크가 존재하여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고 환율상승에 의한 외국업체의 경쟁력 상실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¹³⁾

표 2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개방 현황

원자력발전소 (신고리#1,2 기준)	화력발전소 (당진#5,6 기준)
-설 계 : 미개방(수의계약 추진 중) -주기기 : 개방대상이나, KSNP 기술 사양에 따른 유일한 공급자로 수의계약 추진 중 -시 공 : 국제경쟁입찰로 추진계획	-설 계 : 미개방이나, 한전 방침으로 국내 경쟁입찰로 시행 -주기기 : 국제경쟁입찰로 추진 중 -시 공 : 국제경쟁입찰로 추진계획

정부조달 분야도 WTO 뉴라운드의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조달협정 제24조 제7항(검토,협상 및 향후과제)¹⁴⁾에 근거하고 있으며, 금번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달 분야는 제5차 각료회의('03년 하반기)이후 협상을 개시하며, 협상방식은 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5차 각료회의까지 정부조달

12) 발전소 설계는 사업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으며, 아직까지는 개방의 대상은 아님.

13) 한전의 관련부서 담당자는 환율이 900원~1000원/\$일 경우 외국업체는 국내업체와 경쟁력 있지만, '98년 이후의 고환율 상황에서는 외국업체의 경쟁력은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14) ⑥ 본 협정이 발효된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은 개발도상국 관련조항인 제5조의 규정을 고려하면서, 추후 호혜주의에 의거하여 본 협정을 개선시키고.....

의 개념, 정부조달 대상 및 범위, 투명한 절차 등과 같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과 “정부조달협정”상의 정부조달 범위에 대한 조정이 예상되고, 정부조달의 참여국 확대, 대상기관 및 양허범위 확대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인 “정부조달협정”의 확장협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은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정부조달 협의범위가 확정된 이후 (’03년 하반기 제5차 각료회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미개방 분야인 정부투자기관의 서비스부문의 개방과 물품, 건설, 서비스의 조달규모 하한선이 낮아질 전망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발전자회사가 민영화되면, 민간발전회사의 조달은 “정부조달협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의 저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조달 확장협상시 정부재투자기관, 대형 SOC사업(민간주도 포함)이 정부조달 범위에 포함 가능성이 있다.

나. 서비스 협정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에 대한 서비스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라 '94.1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되었다. WTO의 11개 서비스업종 중에서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금융, 운송, 기타 등과 같은 8개 분야는 양허하였으나, 공공성격이 강한 법률, 교육, 병원, 우편, 언론 및 문화(도서관업, 박물관업등) 분야는 양허하지 않은 상태이다. 종합엔지니어링과 건축설계부문은 사업서비스에 포함되어 개방되었고, 건설시장의 경우 일반건설은 '94.1부터, 전문건설은 '96.1부터 개방하고 있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13조(정부조달)¹⁵⁾, 제19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¹⁶⁾, 정부조달협정 제24조 7항(검토,협상 및 향후과제)¹⁷⁾는 WTO 뉴라운드에서의 논의의 근거가 된다.

제4차 각료회의의 서비스 분야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2.6월 서비스협상 상대국 개방요구안 제출
- '03.3월 양허안 제출

15) ②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 협정에 따른 정부 서비스 조달에 관한 다자간 협상을 개최한다

16) ①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협상을 한다.

17) ⑥ 본 협정이 발효된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은 개발도상국 관련조항인 제5조의 규정을 고려하면서, 추후 호혜주의에 의거하여 본 협정을 개선시키고.....

- '05.1월 뉴라운드 협상 완료

WTO 뉴라운드 체제하에서 GATS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 등으로 인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수준으로 개방 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현재 미개방 분야인 교육, 보건·사회, 문화·오락, 법률, 에너지유통관련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구조개편이 진행중인 에너지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분야는 2000년부터 우리나라가 참여해 오고 있는데, 아직은 에너지서비스의 분류를 에너지원별 분류와 에너지 행위별 분류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등 협상의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협상대책반의 원자력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안보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WTO 협정은 보조금의 지급을 규율하고 회원국들의 보조금 지급을 상계하기 위한 조치를 조정한다.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보조금 지급의 중단, 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자체 조사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이 국내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해당 수입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관세(즉,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동경라운드 보조금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협정은 동경라운드 협약과는 달리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협정은 '특정' 보조금(specific subsidy)의 개념도 도입하고 있다. 특정 보조금이란 특정기업 또는 기업군, 특정산업 또는 산업군에게만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WTO 협정은 이러한 특정 보조금에만 적용된다. 특정보조금은 국내보조 또는 수출보조일 수 있다. 반덤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협정은 WTO 협정의 부속협정으로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동경라운드 보조금 협약에는 GATT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들만이 조인하였다.

보조금 협정에서는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상계불가능(허용)보조금 등 3가지로 보조금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허용보조금은 1999년말 모두 폐지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보조금 협정은 농업협정에 따르는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농산물과 공산품 모두에 적용된다.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금지보조금은 수출목표를 달성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내생산품 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들 보조금은 국제무역을 왜곡시켜 무역상대국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금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행위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수 있으며 신속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분쟁해결절차에서 보조금 성격이 금지보조금으로 판정되면 보조금 지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보조금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국은 보조금 지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국내 생산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수입품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이 경우 제소국은 자국이 상대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보조금은 허용된다. 협정은 3가지 형태의 피해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제3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수출국가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시장에서 수출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만일 분쟁해결기구(DSB)에서 피해 판정이 내려지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든지 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피해의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금지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상계불가능(허용) 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상계불가능 보조금은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또는 산업연구(industrial research), 기초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 낙후지역 개발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법이나 규제상 요구되는 환경조건에 기존설비를 적용시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환경보조금 등의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상계불가능 보조금의 지급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수 없으며 상계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지급에는 엄격한 조건들이 따른다.

특히 연구지원 보조금의 경우,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지원과 산업연구의 경우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경쟁전 개발활동의 경우 소요비용의 50%까지 가능하다.

한편 정부출연 연구개발 지원은 정부에서 민간기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지원금은 현재까지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일부 재원을 기술료 명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원자력 산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어렵게 될 전망이다.

4. 중국의 WTO 가입 영향 전망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가입 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11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가입 비준서를 세계무역기구에 기탁하였다. 그리하여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 30일 만인 12월 11일부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WTO 가입은 1950년 GATT를 탈퇴하면서 회원국 자격을 상실하고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한 후 15년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결실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WTO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미국과의 대립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내의 인권문제, 대만문제 등 정치적 현안 및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 경제적 현안들을 이유로 중국의 WTO 가입에 제동을 걸었다. 꾸준하게 가입을 준비해온 중국은 '99년 4월 미국과의 WTO 가입 협상에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농산물교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제안서를 제시하였고 '99년 11월 15일 양국간의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의 악화로 다소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2001년 6월에 구체적인 가입조건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었으며, 2001년 9월에 제네바에서 이행조건 및 시기 등 마무리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었던 것이다.¹⁸⁾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예상되는 시장개방 확대에 의해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국내 기관은 예측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10~15억 달러¹⁹⁾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의 제고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입의 증가와 대중국과 제3국에 대한 수출의 증가 및 비교열위에 있는 한계산업의 퇴출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원자력산업은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정부관련기관이므로 공공부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WTO 가입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이나 국가 투자기업의 상업적 목적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대해서는 자국내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규나 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WTO 협정의 관련 조항에 따를 것임을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원자력산업의 시장개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국의 막대한 원자력산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조달시장의 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진출 가능한 분야와 진출하기 위한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아직 복수간 협정인 정부조달협정에 가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TO의 상품과 서비스 협정에만 저축을 받을 전망이지만, 정부조달협정에의 가입에

18)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2001. 11

19) 이 결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2001. 11)이며, 동 연구결과물에 한국은행은 2002~2008년에 연평균 19.8억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억 달러의 수출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따른 영향과 대책도 아울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WTO의 뉴라운드 출범은 지역주의화 되어가던 경제의 틀을 다시 다자주의 협상 테이블로 모든 나라가 돌아오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원자력 분야도 협상의 틀 안에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조달협정에서 현재 보호받고 있는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시장도 향후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전의 발전회사가 민영화되면 정부조달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는 되겠지만 서비스 분야의 WTO 규범을 따라야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개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한수원(주)이 민영화되지 않고 정부재투자기관으로 존속되어 정부조달협정하에서의 발전소 설계 분야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한수원(주)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머지 발전회사들이 민영화되어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경우 한수원(주)도 더 이상 수의 계약에 의한 국내 산업보호에 주력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지원금의 경우 현재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사업성을 띤 연구개발의 지원과 벤처지원과 연구원 창업 등과 관련된 연구비 지원의 성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논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WTO의 협정에 위배되지 않고 국가 연구개발과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 사업서비스, 건설서비스, 에너지서비스 분야의 협상에 있어서 국익의 최대화와 연구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앞으로 최대 원자력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도하 각료회의 이후 뉴라운드 전망과 대책』, 2001.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도하 각료회의의 의의와 향후 전망』, 2001. 11

삼성경제연구소, 『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2001. 11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2001. 11

외교통상부(www.mofat.go.kr/) 홈페이지 자료 (『WTO 개요』)

외교통상부(www.mofat.go.kr/) 홈페이지 자료 (『WTO 이해하기』, 『WTO 바로알기』)

재정경제부, 『WTO의 과거, 현재와 미래(Uruguay에서 Doha까지)』, 2001. 11

한국전력공사, 『국제무역환경 대응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 산업체제 발전방향 연구』, 1996.1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원전산업 발전방향 정립 연구』, 1999. 11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원전산업 발전방향 정립 연구』, 1999. 11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원전산업 발전방향 정립 연구』, 1999. 11